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20
----------	-----

2016.11.30.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병운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(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임병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17조제1항을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로 하고, 「농산물

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6조제1항을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제1항으로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- ‘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농업기술원이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시험 등의 목적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시험 등의 목적이 「친환경 농업육성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「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11조(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험 등의 목적이 「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
관계 법령

□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

제19조(유기식품등의 인증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, 제조·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(이하 이 장에서 “인증기관“이라 한다)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,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, 제한, 심사 및 재심사, 인증 변경승인, 인증의 유효기간,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,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,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

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유기식품등“은 “무농약 농수산물등“으로 본다.

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,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, 인증기관의 사후관리,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유기식품등“은 “무농약농수산물등“으로 본다.